
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2. 3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간척지농업과)

1. 개정 이유

-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, 가공,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「간척지의 농업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687호, 2022. 1. 4. 공포, 2022. 7. 5 시행)됨에 따라 임산물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임산물의 정의 규정(안 제1조의 2 신설)

- 간척지활용사업에 포함되는 임산물의 범위를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(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)로 규정

나.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 납부기한 연기 요건 중 축산물·임산물 포함(안 제7조 변경)

-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농산물 또는 수산물 생산 단지 용도로 매각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에 축산물·임산물도 포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임산물) 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(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농산물 또는 수산물”을 각각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자격에 산림조합을 추가하고, 같은 서식 작성방법 제5항에 “산림조합 :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”를 추가하며, 작성방법 제6항중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”을 “농산물·축산물

· 수산물 · 임산물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작성방법 제4항 중 “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”을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·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”으로 하고, 제6항 중 “농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”을 “농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 · 임산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2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「<u>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 제7조(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) ① ~ ③ (생략)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	<u>제1조의2(임산물) 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(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</u> 제2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<u>법 제6조제1항</u>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
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해를 산정,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·기준에 따른다. 1. 영 제2조제1호 중 <u>농산물 또는 수산물</u>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또는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<u>농산물 또는 수산물</u>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	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</u> ----- ----- 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</u> ----- ----- -----
---	--

조성토지 등(□ 토지 □ 건축물)의 임차신청서

※ □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			
신청인	① 성명	② 생년월일				
	③ 주소	전화번호				
④ 임차 희망지	소재지 (잠정 지번)	지목	임차면적 (㎡)	임차기간	㎡당 임차료 (원)	임차 총액 (원)
⑤ 신청자격	[] 영농조합법인 [] 영어조합법인 [] 농업회사법인 [] 어업회사법인 [] 지방자치단체 [] 한국농어촌공사 [] 농업협동조합 [] 수산업협동조합 [] 산림조합					
⑥ 임대목적						
사용개시 연월일						

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
□ 토지 □ 건축물의 임차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

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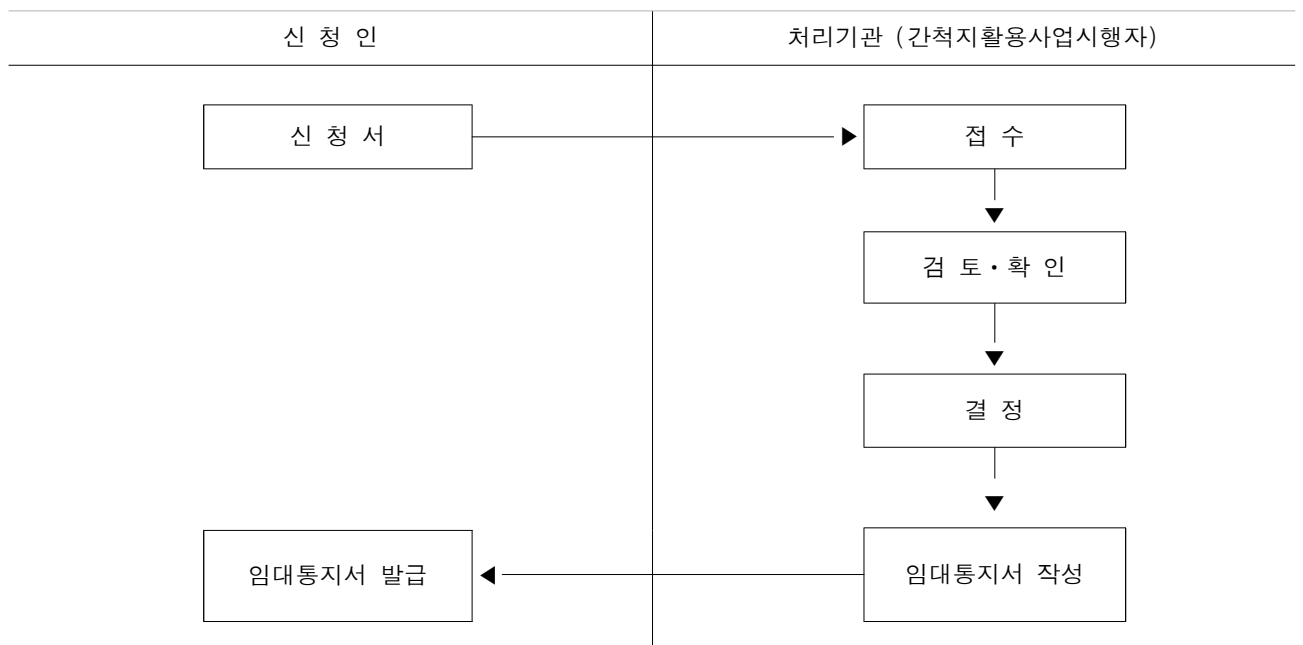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 안내

제출 및 처리기관	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
작성방법	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. 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,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. ④ 임차기간은 5년 이내로 적습니다. ⑤ 신청자격 -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: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에 있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,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 -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: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에 있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,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 - 한국농어촌공사: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- 농업협동조합: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- 수산업협동조합: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- 산림조합: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⑥ 임대목적: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를 적습니다(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저장·유통시설 단지,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, 시험·연구 및 교육·훈련 시설 등)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조성토지 등(□ 토지 □ 건축물)의 매입신청서

※ □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		
신청인	① 성명		② 생년월일		
	③ 주소		전화번호		
매입 희망지	소재지 (잠정 지번)	지목	매입면적 (㎡)	㎡당 가격 (원)	토지가격 (원)
④ 신청자격	[] 후계농업경영인 [] 후계어업경영인 [] 전업농업인 [] 전업어업인 [] 영농조합법인 [] 영어조합법인 [] 농업회사법인 [] 어업회사법인 [] 피해농업인 [] 피해어업인 [] 기타				
⑤ 매각대금 납부방법	[] 일시납부 [] 분할납부				
⑥ 사용목적				사용개시 연월일	

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□ 토지 □ 건축물의 매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간척지 활용사업시행자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음

조성토지 등의 매입신청 안내

제출 및 처리기관	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
작성방법	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. 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,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. ④ 신청자격 - 후계농업경영인·후계어업경영인: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·후계어업경영인 - 전업농업인·전업어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·전업어업인 -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: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에 있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 -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: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에 있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 - 피해농업인·피해어업인: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·어업인 - 기타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,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추천한 자 ⑤ 매각대금 납부방법: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에 표시합니다. ⑥ 사용목적: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를 적습니다(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저장·유통시설 단지,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, 시험·연구 및 교육·훈련 시설 등)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